붙임2 **해양경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6건)**

□ 적극행정 성과사례(4건)

※ 직제순 나열

사 례 제 목 (정책명)	1.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바다 만들기			사례 유형	B-③
기관명 (부서명)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	주 공적자	이미향(032-835-2387)	
			부 공적자		
			부 공적자		
각종대회 수상실적	-				
국민 추천 여부	Y □ N ☑	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	Y □ N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울산, STOLT GROENLAND호 폭발·화재 사고

'19.9.28(토) 10:51경 울산 염포부두 계류중인 STOLT GROENLAND호(케미컬선, 25,881톤)의 9번 화물탱크(스티렌모노머를 적재)에서 원인미상의 폭발·화재 발생, **내알콜포 29.3톤 등 사용**하여 18시간만에 화재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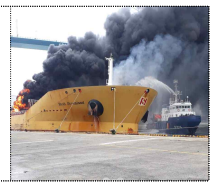

○ 도출된 문제점

- 폭발탱크 적재 화학물질 정보파악에 **1시간 59분 소요**

사고발생 후 30분 경과	사고선박의 화물이 석유제품이 아닌 케미컬임을 확인
▽	
39분 경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울산항에서 하역할 물질 8종 적재 확인
▽	
1시간 10분 경과	선장을 통해 3번 탱크 화물의 폭발위험성 확인
▽	
1시간 59분 경과	방제과 직원이 대리점에 방문하여 전체 화물적재목록(Stowage plan) 입수, 전파

- 물질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응기관이 '화물 중 **금수물질***이 있다' 고 언급하여 **사고대응**에 **혼란**초래

* 물과 접촉하면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 비축된 내알콜포 전량 소진, 추가폭발 대비하여 28톤 긴급동원 (광양 8, 대산 15, 부산 5)

추진 내용	○【법령개정】 선박에서 위험물 반입신고 시 선내 적재된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여 물질정보를 신속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중** | 현행		개정 후		기대효과
---	---	---	---	---
위험물반입신고서 상 **하역물질만 신고**	→	적재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신고	=	신속한 자료 파악, **적극행정 실현**	 ※ 사고 시 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물질파악이 지연될 경우 **직접 찾아가서 물질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Back-Up 시스템 운영**(법령 개정 시까지) ○【신속한 정보 파악】 해상화학사고시 대응요원의 사고물질에 대한 빠른 이해와 신속한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핵심정보 위주의 "물질 정보집" 작성 추진** * 기름과 달리, 화학사고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하여 사고 시 물질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제도 개선】 **HNS운반선**(위험물운반선) **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추진** - 해양환경관리법상 HNS유출시 오염원인자의 방제조치의무(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배치) 법적 근거가 미비 ○【공감대 형성】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관련기관 및 업체 대상 세미나 추진 ○【사고대응 자재 확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에 효과적인 **내알콜포 확보 방안 마련**
주요 성과	○ 국내 해역으로 물동량이 있는 위험유해물질(193종)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유출시 대응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질정보집 작성** [**활용사례**] '20.4.22. 보령 케미컬운반선 영진호 사고 시 HNS운반선 적재 화물(이염화에틸렌)에 대한 정보를 작성된 물질정보집 활용, **화재·폭발과 해상유출에 대비**하여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사전 차단**함

<table>
<tr><td></td><td></td><td>

○ 울산 염포부두 폭발화재 사고관련, **대국민**(해양시설 · 선사 · 보험사 · 구난업체 등) **대상 국제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하여 해상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공감대를 형성**('19.12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해수부 요청**(2.1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항만 위험물 반입신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 건의

'19.9.28.,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폭발·화재 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화학물질정보 파악지연 문제를 개선하고자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드림

□ **울산 케미컬 폭발 · 화재 사고개요**
○ '19.9.28. 10:51경 울산 염포부두 계류중인 STOLT GROENLAND호 (케미컬선, 25,881톤)의 스티렌모노머를 적재한 화물탱크에서 원인미상의 폭발·화재 발생, 18시간 만에 화재 진압

□ **울산사고 대응시 화학물질정보 입수 관련 문제점**
○ **폭발탱크 적재 화학물질 정보 파악에 1시간 59분 소요**
- **(30분 경과)** 사고선박의 화물이 석유제품이 아닌 케미컬임을 확인
- **(39분 경과)** Port-MIS 통해 울산항에서 하역할 물질 8종 적재 확인
* 화재가 발생한 9번 탱크의 스티렌모노머 등 6종은 신고되지 않음
- **(1시간 10분 경과)** 선장을 통해 3번 탱크 화물의 폭발위험성 확인
- **(1시간 59분 경과)** 방제과 직원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 화물적재목록(Stowage plan) 입수, 전파
※ 물질정보 입수 세부과정 [붙임 1]
○ **물질정보 입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응기관이 '화물 중 금수물질이 있다'고 언급하여 사고대응에 혼란 초래**

□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그간 추진경과**
○ 해수부장관 주재,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19.11.11.)에서, 해경에서 위험물 반입신고시 Port-MIS에 전체 화물정보를 입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19.12.2.)에 위험물 반입신고시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개정이 포함됨
* 개정시한은 2020년 상반기임
○ '19년도 '2차 해경-해수부 정책협의회('19.12.19.)'에서, 위험물 신고 의무화를 위한「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 요구

□ **건의내용**
○ 해경에서는 임시적으로 해상화학사고 시 신속한 적재물질 파악을 위해 HNS운반선, 선사, 대리점에 직원을 직접 연락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질정보 파악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항만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 반입신고시 통과화물을 포함, 선박에 적재된 모든 화물을 신고하도록 시행규칙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 드림**
※ 시행규칙 개정안 [붙임 2]

</td></tr>
<tr><td></td><td>**실무상 어려움**</td><td>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의 **소관 부처**가 **해수부**로 **법 개정**에 **어려움** 발생

- 위험물 운반선의 화물에 대한 신고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수부 측은 법령부터 개정하고자 하여 개정 진행 속도가 더디게 됨

- 또한, 해수부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3.10)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 내알콜포 확보목표량(386톤)의 36%(140톤)만 보유, 내알콜포 비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

</td></tr>
<tr><td></td><td>**해결 노력**</td><td>

○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재화물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해역을 입·출항한 HNS선박의 선박·선사·대리점의 **연락처**와 **위치정보 확보**, 사고 시 **연락관 파견**으로 화물적하목록을 신속히 입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인정보가 곧 국가의 정보입니다

해 양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상화학사고 시 적재 화학물질 정보파악 관련 지시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기동방제과-3220('19.11.6)호 "울산, 폭발 · 화재선박 조치사항 평가 알림"
나. 기동방제과-217('20.1.21)호 "'19년 해양오염사고 사후평가 영상회의 결과 알림"
다. 기동방제과-231('20.1.22)호 "2020년 해양오염 방제훈련 계획 알림"
2. '19. 9. 28. 10:51,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HNS운반선 STOLT GROENLAND호 폭발 · 화재사고 대응 과정에서 적재 화물정보 파악에 1시간 59분이 소요되어 사고대응이 지체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평시) HNS운반선 적재 물질 정보 신속 확보방안 마련
1) 최근 3년간 관내 입출항 HNS선박, 선사 및 대리점의 연락처와 위치정보 붙임양식에 의거 파악 관리하고 2. 21.(금)까지 본청 보고(지방청에서 취합 제출)
2) PORT-MIS를 통해 관내 입출항 HNS선박과 적재화물 정보 확인
나. (사고시) 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Stowage Plan 최우선 확보 · 대응
1) 선박으로부터 입수
2) 선원 퇴선 등으로 선박으로부터 입수 불가시, 선사 또는 대리점에 전화 또는 연락관을 직접 파견하여 입수 (전화 등 유무선 연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바로 연락관 파견)
3) 사고 초기 상기 방안을 병행 · 시행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 파악
다. (훈련) 화학물질 정보 파악 불시훈련 실시
1) HNS운반선이 입 · 출항하는 해경서 중 무작위로 선정, 불시에 실시
2) 특정 HNS운반선을 지정하여 Stowage Plan 입수, 물질정보 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하여 보고

붙임 : 울산 S. Groenland호 물질정보 파악 경로 및 비상연락망 작성 양식 1부. 끝.

해 양 경 찰 청 장 [해양경찰청장의인]

수신자 본청 해양오염방제국, 지방청 및 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

환경서기 이미향 특수방제계장 휴가 기동방제과장 전결 2020. 1. 23. 하창우
협조자
시행 기동방제과-265 (2020.01.23) 접수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송도동) / http://www.kcg.go.kr
전화번호 032-835-2387 팩스번호 032-835-2994 / beabler@korea.kr / 비공개(5)
정보보안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바다

</td></tr>
</table>

- HNS운반선 사고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 물질정보 파악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함

[여수서] 해상화학사고 대비 불시 상황처리훈련 결과

해상 위험·유해물질 유출에 대비, 신속한 적재화물정보 파악을 위한 불시 상황처리훈련 결과를 보고 드림

□ **훈련개요**

○ (일 시) '20. 5. 1(금) 13:20~14:30

○ (훈련대상) 여수서 해양오염방제과

○ (훈련방법) 절차에 따른 적재화물정보 확보 및 대응전략 수립 훈련

[훈련 시나리오]

'20.5.1(금) 13:20, 여천 사포2부두에서 화물을 하역 중이던 케미컬운반선 WOO GEUN호(마샬군도, 8,473톤)에서 원인미상의 폭발·화재가 발생, 화물탱크 4번(S)으로 전이 중

* 피해사항 : 폭발로 인한 갑판 파공 발생, 화물탱크 화재

□ **훈련절차**

메시지 부여 (본청) •훈련선박지정 •훈련메시지 통보 •SNS 채팅방 개설 ➢ 적재화물 파악 (해경서) •PORT-MIS 정보 확인 •Stowage Plan 입수 (입수 방법 모두 활용) ➢ 물질정보 조사 (해경서) •물질특성조사 - 화재·폭발 위험성, 물질거동특성 등 ➢ 대응전략 수립·보고 (해경서) •보호수준 결정 •확산예측 •방제방법 등 ➢ 전파·보고 훈련종결 (해경서) •대응요령전파 •훈련종결

파악과 동시에 문자망 및 SNS 공유

□ **훈련결과**

< 잘된 점 >

○ 적재화물 파악(사고발생 18분) 및 물질특성(사고발생 20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짐

○ 물질정보에 따른 보호수준* 및 대응자원** 결정이 적절

* 보호복 : 3·4형식(C급) / 호흡기 : 방독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장화 등

** 선체온도 확인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및 진압시 비축기지 내알콜포 동원 등

○ 적재화물이 기름의 일종으로 CARIS를 통한 화학물질 확산예측이 불가하였으나, 바람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대피거리 등을 결정하였음

* 화물탱크의 화재전이까지 고려하여 예측, 대응

< 미흡한 점 >

○ PORT-MIS를 통한 선박정보는 확인 하였으나, 화물정보 파악이 누락, 대리점을 통한 Stowage Plan 확보가 안되었음

○ 사고상황공유앱(화학물질안전원) 개선을 통한 관계기관 간 상황공유 누락

* 기름사고일지라도 폭발·화재 발생시 화학물질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

○ 사고선 예인 및 지역주민 대피 결정 주체*와 기준**이 모호

* 접안된 선박의 경우 소방에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

** CARIS를 통한 피해거리 예측이 불가시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결정 필요

□ **훈련 시차별 진행사항**

연번	임무내용	처리	대상자	시간	경과
1	메시지 부여(카톡)	○	본청	13:20	-
▪ 적재 화물 파악					
2	PORT-MIS 정보 확인	△	여수서	13:28	+8분
3	Stowage Plan 입수(선박 또는 선사)	○	여수서	13:38	+18분
4	Stowage Plan 입수(대리점)	×	-	-	-
5	Stowage Plan 입수(연락관 파견)	○	여수서	13:40	+20분
▪ 물질정보 조사					
6	적재화물 물질특성 조사	○	여수서	13:40	+20분
7	개인보호 수준 결정	○	여수서	13:47	+27분
8	확산예측	○	여수서	14:07	+47분
▪ 대응전략 수립					
9	대응장비 파악	○	여수서	13:47	+27분
10	방제방법 결정	○	여수서	13:47	+27분
11	전문가 자문 요청	×	-	-	-
12	대응전략 수립 보고	○	여수서	14:46	+86분
▪ 전파					
13	현장대응요원 활동지침 전파	○	여수서	14:03	+43분
14	관계기관 전파 및 협조 요청	○	여수서	13:47	+27분

○ **내알콜포**의 **비축** 목표량 **확보**를 위하여 중기사업계획('20~24)에 내알콜포 **부족량**을 **반영**하여 **예산** 신청

기타 에피소드

○ 울산 염포부두 폭발·화재 사고당일('19.9.28), 관련 SNS 글이 6천여건 리트윗 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상당하였다. 이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한 글을 읽으며, 국민들에게 화학사고에 대해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해상화학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추진하는 정책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 례 제 목 (정책명)	2. 無예산 함정정비실습장 조성으로 장비관리능력 고도화 추진 (함정 정비실습장 운영)			사례 유형	C-②
기관명 (부서명)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지원과)	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	주 공적자	경위 이철원(032-835-3174)	
			부 공적자	경사 박진우(032-835-3574)	
			부 공적자	경장(승) 김진규(032-835-3474)	
각종대회 수상실적	없 음				
국민 추천 여부	Y □ N ■	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	Y □ N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Y □ N ■

주요내용

추진배경

□ 추진배경

○ 함정가동률 향상을 위한 **복수승조원제 운영**('18년 시행)으로 **함정장비 피로도 누적**에 따른 **장비 관리 전문성 강화 필요**

※ 복수승조원제 : 함정 1척에 2개 이상의 승조원팀을 구성하여 교대로 함정운영

○ 非전문계열(공채 등) 채용확대와 함정 내 순경·경장 근무비중 증가(현원 50%)로 인해 **함정인력의 장비관리 숙련도 미흡**

⇨ 예방정비(PMS)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정비에 대한 실무교육이 절실하나 **정비실습장 운영 또는 위탁교육에는 막대한 예산 필요**

< 분 석 >

서특단 내 순경·경장 비율⬆ 복수함정(6척) 장비피로도⬆ 외주수리·부속구매 20%⬆ ⇨ **장비관리 및 예방정비 내실화 운영 절실**

[참고 1] 서특단 인력 현황

※ 신임 경찰관 증가로 총 현원 434명 중 순경·경장 50%(220명) 차지

복수함정 6척, 9팀

구분	본단	경비 지원	경비 작전	진압	3005	3008	1002	501 -02 ABC	503 -18 ABC	513 -26 ABC
현원	**436**	28	27	54	44	44	36	66	69	68
순경·경장	**220**	13	13	34	16	19	18	35	41	31
비율 (%)	**50 %**	46	48	63	36	43	50	53	59	46

[참고 2] 최근 3년간 장비고장에 따른 수리,구매 건수 증가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4
합 계	**904**	**1,091** (전년 20%⬆)	**604** (전년 60%⬆ 예상)
외주수리 (건)	120	106	22
부속구매 (점)	784	985	582

추진 내용

□ 예방정비 내실화를 위한 자체 TF팀 구성 및 운영

ㅇ (TF팀 조직) 함정 장비관리 분야의 비전문가인 공채 및 신임순경 등 효율적인 예방정비 내실화를 위한 TF팀 운영 (팀장포함 총 40명 구성)

※ 관련근거 : 서특단-3404(20.3.4.) "예방정비 내실화 T/F 추진계획"

ㅇ (소통 및 회의) TF팀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소통과 고민,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 수집

⇨ 실질적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실습장 마련 절실 확인

※ 전문실습장 조성 소요예산 : 약 22억 추산 (건물 및 전문장비)

①2. 13 팀장 분과장 회의

② 3.09 팀장, 팀원 소통

해사고(기관실습장)

ㅇ (실습장 조성) TF팀 소통 및 아이디어 회의결과, 함정 수리고품 및 재물조사시 발생되는 불용품을 활용한 실습환경 조성 추진

"함정에서 고장난 고품을 실습재료로 사용하여 부담없이 실습에 활용 가능"
"고품을 헐값에 매각하기 보다는 재활용하여 실습장 조성에 활용"

※ 관련근거 : 서특단-4578(20.3.25.) "기관실습장 조성 추진 계획"

[참고 3] 최근 3년간 서특단 고품 매각 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고품, 불용품(점)	103	314	331
매각대금(원)	370,000	1,010,000	'20. 5월중 매각예정 (약 1,000,000원)

주요 성과

□ 無예산 함정장비 정비실습장 조성

ㅇ (실습장 공간마련) 넓은 실내공간과 수리고품, 장비부속, 불용테이블등 이동이 수월한 본단 1층 창고건물 활용(前 인천서 정보통신계 창고)

ㅇ (창고 내부 정리) 기존 창고건물 정리정돈 및 내부페인팅, 전기작업

① 기존 잡자재 철거

② 정리정돈 및 청소

③ 내부페인팅

	주요 성과	○ (불용테이블 이동배치 및 리폼) 불용테이블 중 실습선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테이블 선별(헬스장비 및 탁구대 활용) 및 상판 리폼 자체 설치 ① 불용테이블 선별 ②헬스장비이용 엔진거치대 ③ 테이블 상판부착 ○ (수리고품, 장비부속 이동배치) 단정엔진 및 주기관, 진공변기 등 기관실습장 및 전기실습장으로 독립공간구성, 부식된 고품정비, 자체 공구거치대 제작 ① 단정엔진 이동 ② 실린더헤드 배치 ③ 도기 및 진공변기 배치 □ 함정 정비실습장 조성완료 (조성기간 3.17~4.27 / 총 42일) 함정 정비실습장 조성(기관 및 전기실습장 구분) - 실습재료(고품, 불용품) : 실린더헤드 등 89종 177점 - 집기류 : 실습선반 등 25종 36점 / 공구류 : 바이스 등 33종 82점 - 예산절감액(추산) : 약 500,200천원 (※ 실습건물 및 신품기준 산정)

구분	계	실습건물	실습재료	집기류	내부 인테리어	공구류
금액 (천원)	500,200	200,200	285,000	8,800	5,000	1,200

* 인천관내 선박교육시설 전무에 따른 실습장 구축으로 교육 시간·비용 절감

	실습장 운영	□ 부담없이 이용하는 분해조립 정비실습장 운영 시행 / (20.4.29~) ○ 운 영 : 주중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가능 (사전 협의) ※ 순경·경장 대상 월 2회 교육 실습 진행 ○ 교관구성 : 함정 및 진압대 선임 동료강사 부재시 교관(TF팀원) 실습 교육 ○ 이용방법 : 방문기록 → 재료선택 → 분해 조립(실습) → 정리정돈(청소)

	실습장 운영	□ 운영실적 정비실습장 참석 (3008함 등 총 26명) 실습교육 진행 (5.1.) ① 전자기판 교육 ② 단정엔진 정비실습 ③ 기관부속 교육 □ (기대효과) 함정인력 장비관리 전문력 향상을 통한 철저한 예방정비로 함정가동률 제고 ㅇ 선임결찰관의 업무지식과 know-how를 신임경찰관에게 정보 공유 ㅇ 신임경찰관에게 분해조립에 따른 업무역량 강화 및 정비 자신감 부여 ㅇ 자기 주도적, 능동적 예방정비 확행에 따른 함정가동율 제고
	실무상 어려움	ㅇ (정박근무일 감소) 집중근무제, 복수승조원제 등 운영에 따른 정박근무일수 감소로 정박 근무 시 바쁜 업무 소화로 인한 정비실습 참여율 저하 우려 ㅇ (교육효과의 선입견) 실습장 운영을 통해 공채 및 신임순경들 대상 교육진행에 대해 "신임들이 그거한다고 함정일을 잘배우겠어?" 라는 식의 선입견 존재 ㅇ (전문교관 운영) 함정경력이 많은 전문교관 섭외 및 운영 시 함정별 교대주기에 따라 부재 발생하여 운영상 어려움 상존
	해결 노력	ㅇ 함정별 참여를 위해 본단 부서장 및 함장(기관장, 직별장), 인천서 (장비관리과장)에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 실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요청 ㅇ 각 함장 및 기관장, 정비팀장 등 대상으로 정비실습장에서 함정장비를 직접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교육참여 공감대 형성 ㅇ 함정 장비별로 담당직원을 사무실에서 지정하여, 담당한 실습장비에 대한 매뉴얼 숙지 및 선제적 실습을 통해 교관으로 양성하여, 함정 공채 및 신임순경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
	기타 에피소드	□ 함정 실습장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ㅇ 서특단에서 창고로 쓰던 공간에서 하나하나씩 함정 정비실습장으로 조성되는 모습을 만들어 가는 모습에 *"나도 이런 부분은 모르니 실습을 꼭 해봐야지"*, *"이 부분 알려면 매뉴얼도 같이 보면서 실습해야겠는데?"* 라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정비보급계원들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서 실습장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증빙자료

1. *서특단-無예산 함정정비실습장 조성으로 장비관리능력 고도화 추진-001-T/F운영 추진계획*
2. *서특단-無예산 함정정비실습장 조성으로 장비관리능력 고도화 추진-002-실습장 조성 추진계획*
3. *서특단-無예산 함정정비실습장 조성으로 장비관리능력 고도화 추진-003-실습장 운영계획*
4. *서특단-無예산 함정정비실습장 조성으로 장비관리능력 고도화 추진-004-방문기록대장*

<table>
<tr><td>사 례 제 목
(정책명)</td><td colspan="3">3. 홍합분쟁의 한가운데서 적극적인 수사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을 종식하다</td><td>사례
유형</td><td>A-②, ④
B-①, ③</td></tr>
<tr><td rowspan="3">기관명
(부서명)</td><td rowspan="3">해양경찰청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td><td rowspan="3">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td><td>주 공적자</td><td colspan="2">경위 손유곤032-835-3174)</td></tr>
<tr><td>부 공적자</td><td colspan="2"></td></tr>
<tr><td>부 공적자</td><td colspan="2"></td></tr>
<tr><td>각종대회
수상실적</td><td colspan="5">없 음</td></tr>
<tr><td>국민
추천 여부</td><td>Y □
N ■</td><td>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td><td>Y □
N ■</td><td>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td><td>Y □
N ■</td></tr>
<tr><td rowspan="2">주
요
내
용</td><td>추진
배경</td><td colspan="5">○ 마산 홍합은 매년 500억원 정도 생산, 어업인들의 주요 생계 유지 수단
○ 2019년, 홍합 어업인 間 분쟁으로 약 100건의 형사 민원 발생
○ 단벌적 형사처벌을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개선 절실</td></tr>
<tr><td>추진
내용</td><td colspan="5">□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사례 1)
○ (기존)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절차
· 어촌계 총회 개최 7일전 총회소집통지서 발송
· 어촌계 총회(조건 : 과반출석)후 신청서 및 총회회의록을 서면 제출
○ 홍합 어업인 間 분쟁사항
·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시 현실적으로 매번 총회개최가 어려워 허위의 총회회의록 작성·제출하는 것에 대한 상호 비난 및 형사처벌 요구
○ 제도개선 내용
· 관리선 사용시 총회회의록 대신 대의원의사록(소집통지·과반출석 불필요) 제출 가능
□ 양식장 관리선 2개소 이상 양식장 조업 가능토록 개선(사례 2)
○ 홍합 어업인 間 분쟁사항
· (기존) 관리선 사용승인 받을시 다른 양식장에 중복 사용승인 불가
· 관리선이 2개소 이상의 양식장에서 조업시 어업인 間 상호 고발 난무
○ 제도개선 내용
· 수산관련 법령(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상, 2개소 이상의 관리선 지정가능 하도록 해석 가능한 조문과 유일한 판례도 찾아내어 지자체 공유
【대법원 판례 “2017도16725” 발췌 내용】
관련 법령에 의하면 특정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어장에서도 같은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필요시 미리 다수 양식장과 장기간으로 양식장 관리선 지정 받도록 제도개선</td></tr>
</table>

추진 내용

□ 조업과정에 배출되는 어획물 및 부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사례 3)

○ (기존)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 홍합조업 중 해양 배출되는 어획물(홍합) 및 그 부산물(패각, 족사 등)은 폐기물로 보아야 하여 수거처리 되어야 한다고 해석

○ 홍합 어업인 間 분쟁사항

· 정상적인 조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양배출되는 어획생물 및 부산물을 모두 폐기물로 볼 경우 대부분 어업인이 범죄자로 전락, 상호 고발로 "어업인들을 모두 죽일셈이냐" 는 집단 민원발생

○ 추진내용

· '19. 9월 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 변경 및 지속적 제도개선 요청

· '19.12.12.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제도개선 등 협의

· '19.12.18. 유관기관(해양수산부 등 8개) 14명 및 어업인 5명과

<간담회 개최 및 조업 현장실사>

· '19.12.26. 해양수산부, 기존 유권해석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전환

해양수산부 회신내용('19. 12. 26.)
어획활동 과정에서 어획생물(생물의 부산물 포함)이 선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해상으로 탈락하는 것은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보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제도개선

주요 성과

개선 前	개선 後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부분(사례1)	
(7일전) 통지 ⇒ 총회 ⇒ 회의록 제출	대의원 의사록만 제출
양식장 관리선 중복 지정 가능 부분(사례2)	
1척이 1개소 양식장만 조업 가능	1척이 2개소 이상 양식장 중복 조업 가능
양식어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어획물 및 부산물에 대한 부분(사례3)	
모두 폐기물로 수거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문제점 발견시 제도개선 추진
양식장 관리선 관련 형사사건 접수현황	
2019년 약 100건	2020년 0건

	실무상 어려움	○ **홍합 어업인들 間 상호 분쟁, 상대방을 고소 고발을 한 뒤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수사관(경위 손유곤)이 "편파 수사한다, 직무유기 한다. 등" 각종 민원 제기** · 담당 수사관 은 국민권익위원회(3건), 검찰청 고발(1건), 국민신문고(11건) 등 각종 민원조사 대상자가 되었으나, 정부 조사기관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 공정하게 수사업무를 집행하여 "공무원으로서 이렇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처음봤다"며 오히려 호평을 받음 ○ **해양수산부의 (기존)유권해석이 어업현실과 맞지 않아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상대, 유권해석 변경 및 제도개선 설득에 일선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으로서 한계를 느낌.** · 해양수산부의 (기존)유권해석에 대해 2019. 9월경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해수부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 ○ **당시 부서 직원이 2명에 불과, 기본업무(범죄단속 등)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사건 처리에 밤새워 담당업무 추진** · 12억대 방오용페인트 유통 사범(구속2, 불구속 5) 검거 등 · 2억원대 해삼 불법유통 사범(불구속 4명) 검거 등
	해결 노력	○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부서(해양보전과) 설득 과정에 **해양경찰청 본청 담당자**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대응**, 제도개선을 이끌어냄 ○ 부서 직원이 2명에 불과, 기본 접수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형사계 · 과장 등**과 **소통, 협의**하여 부서 직원 3명으로 충원, 사건 해결에 집중
	기타 에피소드	○ 창원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소속 변호사 염진아, 마산수협 조합장 최기철, 마산합포구청 수산담당자 김태운 주무관 등 지역사회의 창원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처리에 대해 호평일색 ○ 해양경찰의 적극행정은 "선량하고 영세한 어업인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 **"수사하는 사람이 법대로 처벌만 하면 되지 무슨 제도개선이냐", "그런 건 우리 일 아니다"**는 주변의 다소 냉소적인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홍합 분쟁 종식에 기여, 해양경찰 수사관으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

사 례 제 목 (정책명)	4. 첨단 ICT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례 유형	A-③ B-①
기관명 (부서명)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	주 공적자	경사 윤성환	
			부 공적자	경감 소경근	
			부 공적자	경사 심경찬	
각종대회 수상실적	없음				
국민 추천 여부	Y □ N ■	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	Y □ N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Y □ N ■

주요내용

추진 배경

◈ 광범위한 관할해역의 특성상 효율적 · 선제적 예방과 대응 한계로 해양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해양주권·안전·치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증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및 삼면이 바다인 해양 특성상 해양산업 발달로 해상조난 및 인명사고 지속적인 증가

< 최근 해상조난사고 및 연안 인명사고 / 해경청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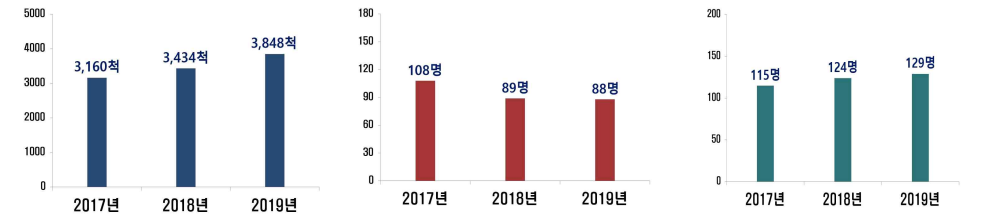

선박 조난사고 | 선박 인명사고 | 연안 인명사고

○ 유조선 및 화학물질 운반선 등 빈번한 통항으로 대형 환경 오염사고 발생 위험 상존(세계 5위 원유 수입국)

< 최근 해상조난사고 및 연안 인명사고 / 해경청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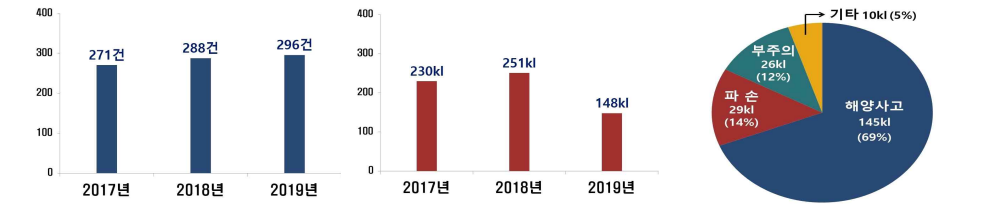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 오염사고별 원인

○ 밀입국 · 밀항사범 등 비 군사적 해양치안사범 지속적 발생

○ 한정된 감시 자산으로는 광활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및 해양재난·범죄·오염 등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대응 한계

□ 정부기관 분산된 감시자원 융합으로 해양 위협요소 선제적 대응 필요

○ 완도서는 해양에서의 일선 기관으로서 통합 관제시스템, 중·소형 함정, 방제정, 연안구조정 등 다양한 감시자산 운용

○ 유관 기관은 드론, CCTV, 마을방송장치 등 현대적 감시자산 운용

○ 행정 기관 간 보유한 감시자산 통합 · 활용을 통한 국가 예산절감 및 한정된 감시자산 한계 극복, 저비용 고효율 해양감시 체계 구축

추진 내용

□ 「완도해경서 - 완도군」 간 협의결과 각종 불법행위, 사회적 약자 무관심, 범죄 취약구역 등으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역할 이해관계 부합

○ 각종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과 완도군 협조강화로 위급 상황 대응

○ 대규모 해양오염 및 자연재해 시 265개 유·무인도에 신속한 상황 전파

○ 분기별 민·관·군 현장중심 합동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협력체계 강화

○ 정기적 교류를 통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Win-Win 전략 사업 지속적 모색

◆ 최근 3년간 완도서 해양사고 발생대비 완도군 해양사고 발생통계

유형 / 년도	총 계 (건/명)		선박사고(건/명)		비선박사고(건/명)		응급환자(건/명)	
	해경서	완도군	해경서	완도군	해경서	완도군	해경서	완도군
2017년	393/1245	314/1060	173/1007	112/842	49/60	35/44	171/178	167/174
2018년	409/766	337/580	133/471	91/318	60/68	37/42	216/227	209/220
2019년	434/1020	368/709	140/677	94/408	38/62	23/25	256/281	251/276
발생비율	82.4%		66.6%		64.6%		97.5%	
완도서 관내 4개 지자체 중 완도군 해양사고 전체 약 82.4% 로 감시자산 통합 필요성 대두								

□ 안전재난시스템을 연계하여 **섬, 해안가 마을 등** 소외된 지역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

○ 청산도 등 도서지역 및 각 항포구에 설치된 CCTV **연계**(완도해경서 종합상황실 설치)로 실시간 정보수집 및 취약지역 감시강화

* 완도군(도서지역 포함) 취약구역 등 총 302개소 907대 CCTV 설치 운영중

○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 등 기상악화 또는 대형인명사고 발생 시 265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된 지역에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연계**(완도해경서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

* 완도군(도서지역 포함) 총 274개소 마을방송시스템 보유 중

○ 완도군 보유중인 **드론** 장비 활용, 화재선박이나 실종자 발생 시 **실시간 현장영상을 종합상황실과 공유** 정확한 상황판단이 가능하도록 추진

* 완도군, '20. 4. 영상 송출이 가능한 드론(약 7천만원 상당) 도입

○ 저비용 고효율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보다 **입체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무인비행장치(드론) 도입** 추진

주요 성과

□ 「완도해경서 - 완도군」 간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CCTV 통합 관제시스템(302개소 907대) 공동 관제 권한 인수 협의 완료

▶ 완도해경서 종합상황실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완료

▶ 범인 도주경로 및 항포구 익수자·화재선박 발생 등 실시간 확인 · 분석

항포구 선박 화재

➡

사고 지역 선정

➡

관제모니터 표출

➡

관제요원 분석

▶ '20. 5월 中, 안전재난시스템(드론, CCTV)을 연계한 **완도해경-완도군 합동 훈련** 실시 예정(전복절도범 검거상황 가정)

주요 성과		○ 완도군 마을방송시스템(274개소) 공동 운용 권한 인수 협의 완료 ▶ 완도해경서 종합상황실에 마을방송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 완료 ▶ 해양오염 등 대형해난 사고 발생시 주민 협조 요청 및 풍랑주의보 발생 신속한 정보전달 * '20년 7월 경 사업완료 예정

대형 해양사고		사고 지역 선정		정보전달		상화 처리
	➡		➡		➡	

○ 완도군 드론 → 완도해경 종합상황실, 실시간 촬영영상 제공 협의 완료

▶ 상황발생, 완도군 드론 비행 협조요청 → 완도군 드론 실종자 수색 및 현장 촬영 → 완도해경 상황실, 드론촬영영상 실시간 전송

해양사고 발생		드론 항공 촬영		영상 상황실 전송		관제요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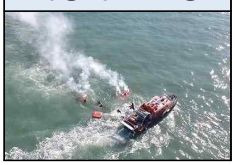	➡		➡		➡	

○ 완도군 → 완도해경, 드론 3대(총 1억 5천만원 상당) 무상양여 협의 완료

* 20년 4월 드론(약 7천만원 상당) 1대 인수완료, 6월 中 2대 추가 인수예정

▶ 해상임무에 특화된 기능 추가요청으로 드론 제원 상향

현 행		개 선(추가 기능)
카메라 10배줌, 경광등, 전광판, 스피커	▶	카메라 32배줌, 열화상카메라, 자동팽창식 구명팩 등
취득단가 : 4천만원		취득단가 : 7천만원

※ 카메라 성능향상으로 보다 정밀한 해상수색이 가능해 졌으며, 투하식 구명팩 기능 추가로 구조세력의 접근이 곤란한 해상의 익수자 구조가 용이

사 진	제 원
	이엘피케이뉴 JDS (약 7,000만원 / 운용PC 등 장비포함) 최대이륙중량 : 18kg 이하 호버링 가능한 최대풍속 : 14m/s (권장사용환경 ~12m/s) 주요기능 : 카메라(32배줌), 스피커, 경광등, 열화상카메라, 자동팽창식 구명팩 투하기능 등

◆ 『완도군 → 완도해경서』 드론 관리전환에 따른 추진경과

장비도입 및 운용 필요성 제기		드론 추가 요청 및 협력방안 모색
■ 전남드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 교류협력강화 MOU 체결('19.11. 29) ■ 완도군과 스마트 드론 운영 협의 ※ 스마트 드론 2대 확보 추진	➡	■ 해상 맞춤형 드론 필요성 피력 ※ 자동팽창식구명팩, 열화상 기능 등 요청 ■ 완도군과 스마트시티 드론 운영 협의 ※ 드론 1대 추가확보 추진 ■ 해경구조대 드론 시뮬레이션 구매 설치

		드론 확보 및 운용 방안 모색 ('20년 3월~4월) ■ 전남드론교육원 교육 협조 방문 ※ 드론 전문가 양성, 무상교육 협조('20.3.13) ■ 완도드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 교류협력강화 MOU 체결('20.3.23) ■ 『완도군→완도서』 업무협의('20.4.2) ➡ 드론 3대 확보 및 운용<예정> ('20년 5월~6월) ■ 완도해경구조대 배치 드론 활용 ※드론(3대) ┌7,000만원(2대) : 해상용 └500만원(1대) : 교육용 ※ 드론 1대(7,000만) 4월 중순 인도, 6월 중 드론 2대 인도 예정
	실무상 어려움	□ 경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드론 등) 예산 확보 어려움 ○ 본청, 지방청 지시사항이 아닌, 경찰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드론운용 시 관련규칙* 상 운용자 자격증 취득을 권고하고 있으나, 드론운용 부서에 자격증 취득을 강제할 순 없어 직원 교육비 확보에 난항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교육훈련) ** 교육 미 수료자의 경우 운용미숙으로 인한 고가장비(7천만원) 고장 우려로 운용을 꺼리는 분위기 다수
	해결 노력	□ 한정된 예산 극복을 위한 해결 노력 ○ 완도해경서-**전남드론교육원** 간 수색구조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11.29) - **드론 자격증 취득비 할인** 및 해상 실종자 등 수색시 인력장비 지원 ○ 완도해경서-**완도드론교육원** 간 드론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3.23) - 드론 훈련 시 **연습장소 제공**, 해경 근무방법(3교대 등)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남드론교육원 완도 드론교육원 ○ 본청, 지방청 관련기능에 지속 요청, **드론 보험료 등 예산 확보** ○ 사업 협력주체(지자체)에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예산확보 어려움을 설명, 지자체 **교육비 예산 지원 추진** □ 운용부서 드론운용술 숙달을 위한 노력 ○ 드론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기 설치** ('20.3.27) * 드론 운용요원 시뮬레이션 반복 숙달 훈련을 통한 드론운용 부담감 경감

○ 완도해경-완도드론교육원 간 협의를 통해 드론운용부서(해경구조대 14명) 드론운용교육(교육기간 4일) 실시

* 교육원, 드론교육비 할인 협조로 한정된 예산으로 드론교육 가능

** 드론운용부서, 4일간의 드론교육 및 체험으로 드론운용 부담감 경감

시뮬레이션 연습	드론운용술 교육	드론운용 체험

○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자격증 취득과정(5.18~6.5) 참여로 드론 전문운용인력 확보

기타 에피소드

[완도해경 - 완도군 간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되는 과정에서]

□ 부처간 협업을 통해 Win-Win 전략 사업은 없는가 모색

○ 신 전용부두 준공('19.5)에 따른 경비함정 등 이전 완료('19.12)

- 신 전용부두 복지관 미 증축으로 해경구조대 구 전용부두 시설 잔류로 상황발생시 구조대 경비함정 등 他 기능과 유기적 관계 단절

* 완도해경서 신 전용부두 복지관 20년 예산 반영 시 23년 하반기 복지관 준공

○ 완도군 구 전용부두 활용 어선계류 및 하역 등 어업전초기지 활용안 모색

완도해경	완도군
WIN	WIN
완도군 예산활용, 신 전용부두 내 해경구조대 사무실 신축으로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완도항 內 대형어선단 유치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Step. ❶	Step. ❷	Step. ❸
완도군 신 전용부두 구조대 사무실 신축 지원 협의 완료	해경구조대 신축 완료시 해경청 기부채납	구 전용부두 완도군 신규사업(어선계류 하역 등 어업 전초 기지) 추진
2 ~ 3월	4월 ~ 6월	7월 이후

- 기 간 : '20. 4. 22.(수) ~ 6. 20.(토) / 59일간
- 발주처 : 완도군청
- 위 치 : 완도해경 신 전용부두
- 규 모 : 240.60㎡(72평)
- 시 설 : 사무실, 장비창고, 대기실 등
- 사업비 : 3.3억

신축 예정 해경구조대 사무실

□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2건)

※ 직제순 나열

사 례 제 목 (정책명)	1. 국가자원 공동 활용으로 코로나를 이겨낸다. (코로나19 대응 해양경찰청 개인보호장구 지원)			사례 유형	A-④
기관명 (부서명)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	주 공적자	황성훈(032-835-2292)	
			부 공적자	박용현(032-835-2392)	
각종대회 수상실적	-				
국민 추천 여부	Y □ N ☑	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	Y □ N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	Y □ N ☑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속출, 전국적으로 증가·확산

○ '20. 1. 1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 대응 '심각' 단계로 격상(20. 2. 24.)

➡ (대통령)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요구(20.2.23.)

○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 발생, 의료진 등의 개인보호장구 부족으로 대응 어려움 호소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발생('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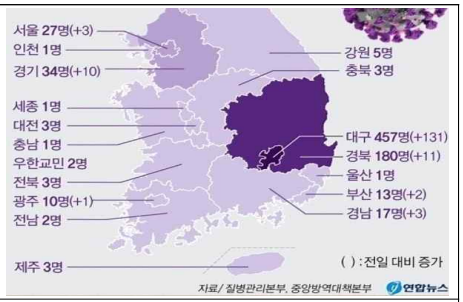

코로나 전국 발생 현황('20.2.23.)

□ 해양경찰청 코로나 19 종합상황대책반 구성, 총력 지원 체계 마련

○ 코로나 의심 환자 수송 체계 마련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밀수입·밀수출 등 특별 단속 전개

○ 영세 어선, 여객선 등을 방문하여 방역 서비스 제공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총력 대응 방침에 맞춰 해양경찰청의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지원

추진 내용

□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방제기자재 비축

○ 태안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재난사고 시 방제 대응을 위해 비축기지(울산·대산·여수)에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자재 비축*

* 개인보호장구 총 69,000세트 보유(LEVEL C, D급)

○ 방제비축기지 운영 규칙상 '국가 재난 시'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코로나 확산 초기 단계로 국가 재난은 미 선포

□ 해양오염사고 대응용 개인보호장구 선제적 지원 결정

ㅇ 2월중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지역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의료진의 개인보호장구 부족 문제 심각” 보도

ㅇ **‘국가 재난 선포 시’** 까지 **지원**을 **미루면 규정**은 **지키는 것**이나,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되려면 **선제적 지원 필요**

* 해양경찰청 코로나 상황대책반 회의를 거쳐 신속한 지원 결정

➡ (대통령 말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요구

- **해양오염사고 대응용 개인보호장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업체 측에 확인 결과 ‘사용 적합’ 확인**
- **대구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보호장구 필요 여부 문의 결과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고마움 표시**

방제비축기지 보관중인 개인보호장구

개인보호장구 구성품

□ 대구광역시 개인보호장구 지원, ‘결정은 신중히, 지원은 빠르게’

ㅇ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분만 남기고, 전량 대구광역시 지원

- (1차) 개인보호장구 5천 세트 긴급지원(2.27)
- (2차) 개인보호장구 10,000세트 추가 지원(3.9)

* 대구·경북 코로나19 재난지역 선포(3.15.)

ㅇ 환자이송 등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18천 세트 현장 지원(2.28)

<table>
<tr>
<td></td>
<td>주요
성과</td>
<td>

□ 국가 자원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으로 코로나 극복 지원

○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 자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공동 활용함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기여

* 연합뉴스TV, KBS, YTN 등 9개* 중앙언론사 및 신문(인터넷) 보도

<table>
<tr>
<td>
</td>
<td>
아시아투데이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030면 피플
김홍희 해경청장, 비상용 보호장구 긴급지원
대구·경북지역 1만세트 후원
해양경찰청은 9일 김홍희 청장 <사진>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총력 지원에 따라 해양경찰청 보유 중인 개인보호장구 1만세트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청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달 27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5000세트를 1차 지원했었다.
이번 지원하는 개인보호장구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발생을 대비해 대산·울산·광양 등 전국 3개소의 방제비축기지에 보관하는 비상용 물자다.
해경은 긴급 필요 물량을 제외한 비축분 1만세트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조상은 기자 cso@</td>
</tr>
<tr>
<td>'20.2.27 개인보호장구 5천 세트 지원(보도)</td>
<td>'20.3.9 개인보호장구 1만 세트 지원(보도)</td>
</tr>
</table>

□ 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 자원은 규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개인보호장구 등을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 차원에서 공동 활용

○ 국가 재난형 해양오염사고 시 국가와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됨

</td>
</tr>
<tr>
<td></td>
<td>실무상
어려움</td>
<td>

□ 규정을 어겨가며, 재난자원의 대규모 지원 추진 부담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비축된 긴급물자를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원 시 감사 등에 의한 지적 부담

➡ **향후, 방제비축기지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국가 자원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강화 예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확보 어려움

○ 해양경찰청에서는 재난형 대형해양오염 사고 대비, 개인보호장구를 비축하고 있으나, 금번 지원으로 대응 물량 부족

* **비축기지 보유분 감소율 48%↓**(2월초 보유량 69,000세트→**現35,000세트**)

○ 세계적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등 제조사 공급량이 부족하여 개인보호장구 물량 확보 차질

</td>
</tr>
</table>

	해결 노력	□ “국민과 재난 대응이 우선”, 적극 능동적 행정 추진 ㅇ 내부적 안위보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과 잘못된 규정은 향후 개정하면 된다는 능동적 실천 의지 * 긴급 대응분을 제외한 가용분 전량 지원 결정 ㅇ 지휘부의 적극행정 추진의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 향후, 재난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추진 예정** □ 적극적인 구매 행정으로 소모된 개인보호장구 재 확보 추진 ㅇ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조달청)의 신속한 구매 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물품 조기 확보 추진 * 일상감사(20.3.) → 계약의뢰(20.4) → 계약체결(20.5.) → 납품(10월 예정) ㅇ 질병관리본부 등 개인보호장구 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납품 기한의 2배로 연장하여 계약 추진 □ 국가 자원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보 및 운영 ㅇ 해양오염사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질병 대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ㅇ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등을 적극 이용하여, 국가 자원의 신속한 지원 추진
	미담 사례	“적극행정, 국민을 먼저 생각하다” 해양경찰청 개인보호장구 지원 실무자로서 징계가 두렵지는 않았지만 규정을 어겨가며 재난 자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의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해양경찰청 지휘부에서도 규정된 제도와 규칙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코로나라는 큰 재난을 이겨내는 데, 내 작은 힘도 기여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적극 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 같다. 앞으로도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현장에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양경찰” 이 되도록 나와 동료를 믿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

<table>
<tr><td>사 례 제 목
(정책명)</td><td colspan="3">2. 코로나19 관련 가짜 손 소독제 제조·수출일당 검거</td><td>사례
유형</td><td>c-④</td></tr>
<tr><td rowspan="3">기관명
(부서명)</td><td rowspan="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td><td rowspan="3">우수사례
담당자
(연락처)</td><td>주 공적자</td><td colspan="2">허준호 (032-728-8668)</td></tr>
<tr><td>부 공적자</td><td colspan="2">이태병 (032-728-8168)</td></tr>
<tr><td>부 공적자</td><td colspan="2">유지원 (032-728-8568)</td></tr>
<tr><td>각종대회
수상실적</td><td colspan="5">없 음</td></tr>
<tr><td>국민
추천 여부</td><td>Y ☐
N ☑</td><td>기관 중점 추진과제
해당 여부</td><td>Y ☐
N ☑</td><td>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여부</td><td>Y ☐
N ☑</td></tr>
<tr><td rowspan="2">주
요
내
용</td><td>추진
배경</td><td colspan="5">☐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수출 금지
○ 지난 2월경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 국내에서도 감염병 예방 제품인 <u>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이 부족</u>하여 국민들의 **불안·공포 심리가 확산**되고 **정부신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u>국외수출을 전면금지</u>하였다.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
(대 상 물 품) ①보건용 마스크 ②손소독제
(금 지 사 항)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수출 전면 금지
→ 밀수출, 매점매석행위 등 집중단속 지시
(신 고 사 항) ① 생산업자 :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신 고 기 한) 다음 날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위 반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 중국 현지(산동성 지역) 외사협조망의 정보제공
○ 대한민국 <u>정부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품질을 보증한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u>하고,
-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한 손소독제 제품이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 중국 소비자(부유층)들은 한국 정부가 생산한 손소독제의 품질을 믿고 최고 15만원에 구입(시중 판매가격 3,500원 대비 약 40배↑ 폭리)
- 대한민국 정부가 생산한 손소독제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 등</td></tr>
<tr><td>추진
내용</td><td colspan="5">☐ 내사착수
○ 국내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생산업체와 수출업체 및 대상자 특정, 범죄수법, 규모, 가격, 유통경로, 가담자 확인을 위한 내사착수(KICS 2020-000004호)
- 국내 외사협조망 총원 동원하여 무역업체 및 수출업체 상대로 첩보수집활동 전개
- 국내 동종업계 종사자 및 과거 전력자 상대 광범위한 탐문활동 실시
- 대상업체 및 대상자, 대상차량 등 추적·미행·잠복·감시활동 추진</td></tr>
</table>

주 요 내 용

추진 내용

□ 중국 현지 외사협조망과 실시간 협조체제 유지

ㅇ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생산한 “손 소독용 스프레이” 「한위구당」 제품 현물 국내 긴급 공수

ㅇ 중국 현지 수입·판매업체, 유통가격, 판매지역, 판매수법, 반입지역 및 수량 등에 대한 정보입수

【중국 현지 외사협조망이 제공한 정보사항 일부】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짜 손 소독제 모습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 및 수량 에 대한 정보	중국 현지 중간 도매상의 판매 광고 정보

□ 범정부적 유관기관 협업체제 가동

ㅇ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는 “손 소독용 스프레이” 「한위구당」 제품이 정부당국에서 직접 또는 보증한 제품인지 확인

- **식약처)**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제조·생산 인허가여부
- **특허청)** 대한민국 상징표지「정부기」 사용 허가여부
- **국과수)** “손 소독용 스프레이”「한위구당」 내용물 성분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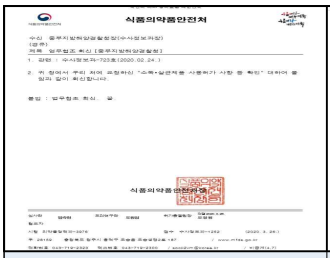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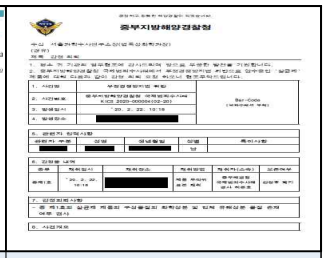

가짜 손 소독제 제조 확인 (식약처, 환경부)	상표「정부기」무단사용 확인 (식약처, 환경부)	제품 성분 감정의뢰 (국과수)

□ 증거자료 위한 내부자 부식(포섭) 외사역량 집중

ㅇ 은폐된 비밀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부식(포섭)이 필요적 요구 → **범죄사실 특정, 영장신청 및 유죄의 증거자료 활용**

★ **내부자 부식(포섭) 성공**

※ 외사기법(노하우)에 따른 부식과정 세부내용 공개 불가(방첩지침 의거 등)

【부식된 내부자가 제공한 증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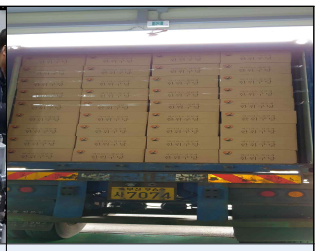

가짜 손소독제 제조 모습	가짜 손소독제 생산 모습	중국 수출 중인 제품 모습

주 요 내 용	주요 성과	□ 가짜 손 소독제 무허가 제조·생산·판매사범 검거(3명) ○ 2)차에 걸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큰돈을 벌 목적으로 무허가 제조시설인 도마업체에서 가짜 손 소독제를 생산하여 판매한 A씨, - 가짜 손 소독제의 원료인 이산화염소(CLO2)를 공급하고 "손 소독용 스프레이"「한위구당」완제품을 매입한 B씨, - 이를 다시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무역업자 C씨 3명을 검거 ▶ **적용법률** ① 약사법 제31조 제4항【5년↓징역, 5천만원↓벌금】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1항【3년↓징역, 3천만원↓벌금】 ③ 화학물질안전법【3년↓징역, 3천만원↓벌금】 **제조·생산업체 A씨 검거** **원료공급 및 매입업체 B씨 검거** **중국 수출 무역업체 C씨 검거** □ 대한민국 국격 및 브랜드 이미지 실추 선제적 차단 ○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 대한민국 정부의 상표(정부기)를 부착한 가짜 손 소독제 제품이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되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으로 2차에 걸쳐 수출되어 중국 전역에 유통되는 상황 발생하였으나, ○ 이를 인지한 중국 현지 외사협조망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중부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적극적인 사건진행으로 3차 수출 진행을 차단하고, 수출 진행중인 제품을 모두 압수조치 하였음. ★ **국제적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법 등 위반사범 전원을 일망타진까지 14일 소요된 것은 외사사건 분야에서 기록될 만한 성과** **【인천 송도 신항만 부두로 이동 중인 가짜 손소독제 전량 압수조치】** **가짜 손소독제를 적재하고 이동중인 트럭 모습** **업체 내부에 보관중인 가짜 손소독제 제품 압수 모습** **무허가 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포장재 모습**

<table>
<tr><td rowspan="3">주
요
내
용</td><td>주요
성과</td><td>□ 유사범죄 차단을 위한 공익목적 언론보도 추진
○ 전 세계적 재난질병 위기상황 속에서 오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공익목적 언론보도 추진

<손소독제 사건 KBS뉴스 등 22개 언론보도> - 증빙자료첨부
 </td></tr>
<tr><td>실무상
어려움</td><td>○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손소독제 제품의 수집된 정보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장시간 소요
○ 은폐된 비밀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 채증 곤란
○ 범증자료 확보를 위한 공장 내부자 부식(포섭)에 많은 시간·경비·인력 투입
○ 사건 규모에 반해 담당외사형사 인력부족 및 압수물 운반·보관 등에 있어서 예산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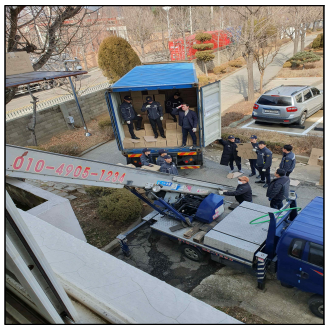 </td></tr>
<tr><td>해결
노력</td><td>□ 수사관의 열정과 끈질긴 노력, 사명감으로 사건진행
○ 중국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사 협조자를 통해 중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손 소독제 제품 현물 확보와 판매방식, 판매가격, 판매업체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입수 체제 유지,
○ 은폐된 비밀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자 부식(포섭)하고자 관련 종사 외사 협조자를 총 동원(국내인,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 동포)하여, 내부 협조자 구축,
▹ 가짜 손소독제 무허가 제조·생산 전 과정 및 대상자 채증하여 자료 제공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범죄사실 특정 자료 활용</td></tr>
</table>

<table>
<tr>
<td rowspan="2">주 요 내 용</td>
<td>해결 노력</td>
<td>
○ 손 소독제 국외 수출 금지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했었던 지능적인 범죄수법과 제품의 제조·생산·판매 규모, 유통경로, 가담자 특정을 위한 각 개소별 담당 외사형사 <u>24시간 배치</u>하여 **잠복·감시·추적 활동 전개**,
▹ 압수수색검증 대상개소 특정(대상자, 대상업체, 대상차량 등)

□ **위반업체에 대한 장소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2회에 걸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범죄사실 특정하고, 인천항 송도 신항 컨테이너부두를 통해 수출진행 중인 가짜 손 소독제 30,019개(시가 약 5억원 상당)압수조치 → **'약사법 등' 위반 일당 3명 전원 검거**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td><td>수출 컨테이너 차량</td><td>가짜 손 소독제 제품 확인</td></tr>
</table>
</td>
</tr>
<tr>
<td>미담 사례</td>
<td>
○ 이와같은 행위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제품을 관할 당국(식약처, 환경부, 특허청)의 일체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하등의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재난질병 위기상황을 이용하여)로 오로지 이윤에 눈이 먼 채 **비양심적인 범죄행위**로,

○ 수십 년간 전 국민이 합심하여 발전시켜 놓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 **경제적 가치를 책정 할 수 없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브랜드 보호**는 물론 국민건강과 관련된 제품의 <u>신뢰성 회복으로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여론형성과 평가를 얻은 사례</u> 임.
</td>
</tr>
</table>